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30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1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1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1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52)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69)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09)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84)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81)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43)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3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3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4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4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45.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46.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47.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4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5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5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57.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58.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59.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6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6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6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3)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7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7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7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7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7)
76.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7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7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8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8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8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추가)
1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추가)
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추가)
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9)(추가)
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추가)
1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7)(추가)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3)(추가)
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9)(추가)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추가)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추가)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추가)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추가)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추가)
1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추가)
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추가)
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2)(추가)
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9)(추가)
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0)(추가)
1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추가)
1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추가)
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추가)
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1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추가)
1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추가)
1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추가)
1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1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추가)
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추가)
1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추가)
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추가)
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추가)
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추가)
1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추가)
1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추가)
1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추가)
1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13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추가)
1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추가)
13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1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1)(추가)
13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추가)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추가)
1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추가)
14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추가)
14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추가)
14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추가)
14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추가)
146.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1)(추가)
1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추가)
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추가)
1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3)(추가)
1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추가)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추가)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추가)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추가)
1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추가)
15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추가)
15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추가)

상정된 안건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12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12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1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12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12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12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12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12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12
1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12
1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12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12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13
1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13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13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13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13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13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13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13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13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13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2)	13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13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13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13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13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3)	13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13
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13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13
3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13
3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13
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13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13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13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13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14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14
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14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14
4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14
4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14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14
45.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15
46.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15
47.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15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15
4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15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15
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5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15
5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15
5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15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5
57.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15
58.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	15
59.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5
6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77)	15
6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6)	15
6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3)	15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16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16
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29)	16
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709)	16
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7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16
7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16
7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16
7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16
7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16
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혜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7)	16
76.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16
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16
7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16
7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16
8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16
8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16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16
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북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16
8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16
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16
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16

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16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16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16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16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16
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16
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16
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17
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17
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복기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	41
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42
1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42
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42
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9)	42
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42
1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7)	42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3)	42
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9)	42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42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42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42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42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42
1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42
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42
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2)	43
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9)	43
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0)	43
1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	43
1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43

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43
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1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43
1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43
1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43
1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1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43
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43
1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	43
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	43
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43
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43
1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43
1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43
1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	43
1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13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43
1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	43
13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1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1)	43
13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43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43
1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14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43
14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	44
14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44
14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44
146.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1)	44
1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44

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44
1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3)	44
1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44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44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44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44
1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44
15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4
15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44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와 청원소위에서 각각 처리한 법률안 및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1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1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1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2)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3)
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3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3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 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 4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 4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11시10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법률안 상정을 해 놓고 나서 하기로 하지요.

○김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어 주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법률안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이 많은 관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운하 위원 예, 여기 자료 요구……

○위원장 맹성규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5월 7일 날 예정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하기로 결정을 해서 관련된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상정된 법안인데 나중에 추후에 하세요. 다 상정시켜 놓고 제가 따로 드릴게요.

○황운하 위원 아, 상정된 법안. 그러면 상정된 법안 처리하고?

○위원장 맹성규 예?

○황운하 위원 상정된 법안……

○위원장 맹성규 법안 처리하고 따로 자료 요구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관련이 없잖아, 오늘 상정된 법안하고.

○황운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위원님 요구하신 건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나중에 자료 요구 시간 다시 드릴게요.

○황운하 위원 공청회 관련 자료 요구인데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맹성규 예, 제가 따로 드릴게요.

○황운하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에서 처리한 청원과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45.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윤후덕 의원 외 1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39)
46.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47.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4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5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5)
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14)
5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5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57.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58.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59.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60.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6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6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3)

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2)
6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9)
6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8)
7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7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7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2)
7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5)
7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7)
76.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7)
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9)
7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3)
7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5)
8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8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0)
8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4)
8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8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8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8)
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7)
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0)
8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4)
9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7)
9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9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8)
9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4)

9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4)

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3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98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신 이종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이종욱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이종욱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지금 의사 진행도 안 했는데 의사를 먼저 해 놓고 해야지.

○김도읍 위원 의사 진행하고 있는데……

○이종욱 위원 하면 되지요,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맹성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순서 하고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을.

○김은혜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제가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끝내 놓고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김은혜 위원 몇 분 걸리지도 않을 텐데 뭘 그거 갖고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1분, 2분 밖에 안 되지않아요.

○김종양 위원 지금 먼저 의사진행발언 간사 이야기 들어 봅시다.

○이종욱 위원 소위 의결 내용 설명하는 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차례 회의 시작 전에 여러 루트로 말씀을 드리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도 안 한 거 논의하다가 일부 쟁점은 다 해소됐고 한두 개 남아서 보류시킨 거 이거를 민주당 안대로 일방적으로 일괄 상정해서 오늘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사인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여 해서 나름 저희들이 국토소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힘들어하는 야당 위원들을 끌고 그동안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뭘니까? 민주당 안대로 안 된 거, 빠진 거 다 넣고 틀린 거 다 고치고, 원안과 차이 나는 거 다시 원안대로 의결할 바에야 법안소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똥개입니까?

아니, 이따위로 국회를 운영하면 소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4박 5일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오전 오후 열심히 해 가지고 토론하고 쟁점 다루고 국토부한테 필요하면 자료 요구하고 지자체 의견 듣고 관련 협회 의견도 듣고. 그런 게 다 부질없이 민주당 의견대로 그냥 통과시킬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난 3월, 4월에 하시지 그랬어요. 뭐 하려고 저한테 그런 거, 국토위 소위 위원들한테 불평 들어 가면서 열심히 했습니까?

5월까지 끝내야 된다고요? 5월까지 끝낼 일이 뭐 있습니까? 6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추가 올린 법안을 봤는데 그렇게 시급한 거 없어요. 6월 달에 추가 토론해서

정리하면 정리할 것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걸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행정부의 하청 기관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국토위를 떠나서 국가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는 거다. 어느 상임위에서…… 진짜 쟁점되는 법안을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두 건 하는 거지 이렇게 열몇 건을 한번에, 그것도 큰 쟁점도 없고 당장 시급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이것 자체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일정 변경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희가 지난 국토소위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앞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과 치열하게 법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임대주택법 법안 내용 아십니까? 도시재정비법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용산공원법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합일점을 찾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맹성규 조금 이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도 모르는 법안이 지금 전체회의에 회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모르시면 국민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정권 4년이면 끝나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평생 안을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아니요……

○김은혜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것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은혜 위원 제가 여쭙습니다. 의사진행해서 용산공원법……

○위원장 맹성규 제가 알고 있는지……

○김은혜 위원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은혜 위원 환경단체들, 토양 오염된다고……

○위원장 맹성규 흩어!

○김은혜 위원 용산공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집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양 오염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하면 지하수의 재오염으로 전체 미군기지 반환 후에 부지 전체에 대해서 토양 오염 정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토양 정화를 일부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에 위해가 갈지 모르는 겁니다. 반환 부지만 일부 조성하는 경우에 토양 정화 이후에 재오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안을 일방 통과하시고 도대체 국민들의 건강, 국민들의 환경 어찌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맹성규 자, 위원님!

○김은혜 위원 위원님들 해외 갔다 오시는 동안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소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행 통과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사진행이고 이게 민주당 정부가 구현하는 진정한 부동산 정치라고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녹지 비율만 문제가 됐던 거야, 용산공원법도.

○위원장 맹성규 문 위원, 가만히……

○김은혜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토의를 하십시오. 단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여기 와서 전체회의 강제 통과한다는 게 이게 민주당 정권 부동산 정치의 실상이지요. 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위원장 맹성규 김은혜 위원님!

○문진석 위원 나머지 쟁점 다 해소가 됐어, 용산공원법이. 녹지 비율만……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제대로 의결하고 와야지요.

○문진석 위원 그러려고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거잖아요.

○김은혜 위원 남 위원 얘기할 때 가로막지 마세요.

○문진석 위원 그리고 법안소위 심의할 때……

○김은혜 위원 발언권 받고 하세요.

○문진석 위원 발언권 받았어요, 지금?

○김은혜 위원 나는 받고 합니다.

○문진석 위원 마이크 꺼졌는데 계속 떠들었잖아요.

○김은혜 위원 문 위원님은 발언권 받고 하세요.

.....

○위원장 맹성규 자, 됐어요.

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실 것을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셔야지 제가 법안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개적으로?

두 번째는……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추가로 법률안을 논의해서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아직 아무것도 보여 드린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올려 놓고 어차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잘 안 되니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세요. 왜 못 합니까? 그래서 논의하신 다음에 각자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못 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걸?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오늘 전체회의 하기 전에 민주당 복기왕 간사께서 저희 야당 위원들 사전 회의 장소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법안 목록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입니다. 이걸 소위에서 의결조차 아직 하지도 않고 전체회의에 바로 올려 가지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문제 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국토소위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국토소위에서 진지하게 법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진석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부 쟁점들은 해소되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 특히 도시정비법 관련해서는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하고 한 이런 법안들인데 공공 분야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 된다고 줄기차게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데 왜 공공만 용적률을 완화하고 민간은 안 합니까? 그게 쟁점인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주요 쟁점인데 이걸 빼 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그게 국민의힘이 동의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공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산구청에서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왔던 것은 용산구 의견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용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면 그걸 듣고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에서 용산구 의견을 듣기로 해 놓고 용산구의 의견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듯한 스탠스가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이재명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입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당이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안을 처리했노라’ 이것 외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거나 보충되지 않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결국 선거용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위에서 결론을 내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도읍 위원님 의견 주셨어요.

○**김정재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가만히 계세요. 저도 반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 보고.

저희는 오늘 22대 전반기 법안을 의결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 30일이 되면 저희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권한도 없고요 자동으로 해산돼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은혜 위원님도 그렇고 다 의견을 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자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2대 마지막 전체회의인데 남아 있는 법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정책을 세 차례 내놓고 후속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법안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논의를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자성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

법안소위에서 반대를 하면 끝까지 계류시켜서 논의를 안 합니까? 제가 여쭙보고 싶어요.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민간의 용적률 상향하면 되지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민간을 계속 주장을 하시고 여당과 정부에서는 공공으로 제한해서 하겠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걸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쭙보고 싶어요, 거꾸로.

시간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논의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5월 7일 날 국회 전체 회의 열리면 저희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아마 4분의 3 이상은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와 가지고 법안을 따라가서 논의해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그것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원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견이 있는 내용, 내용을 뻔히 다 알잖아요, 쟁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안 알고 처리하냐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제 추가로 상정되면 하나하나 해 가지고 이견이 있으신 것 다 듣고 거수해서 처리할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해서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 논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있어요?

주장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법안소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 쟁점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은 더 논의를 하고 그다음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올라오는 게 상식이고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물자동차 관련해서는 서로가 논의를 하다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방으로 가도 어느 정도 국민들도 납득하고 야당 위원들도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정책에 관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일방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5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번 서울·수도권 선거 때문에, ‘주택공급 이렇게 했습니다. 민생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쇼를 하는, 쇼를 위한 가장 비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고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논의를 하다가 통과되지 않은 도시재정비법ियो, 공공개발 좋다 이겁니다. 숫자 늘리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120에서 130%로 확대하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녹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녹지는 줄이지 말라는……

○**문진석 위원** 저것은 법안 심의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의사진행발언과 상관없잖아

요.

○**김정재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잖아요.

녹지를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짓겠다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 그다음에 학교, 특히 학교 부지입니다. 아이들이 놀던 학교 그리고 녹지·공원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학교나 녹지나 공원이나 다 줄이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겠다? 그것도 대단지면 이해를 합니다. 다들 단독 개발이고 과밀 개발이고 도심에 집중돼 있고 나홀로 개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틀에서 도시계획 망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시도에서 하는 도시계획 다 패싱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학교용지에 집이 아파트가 나홀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데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또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시겠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수결로 하겠다고 그러합니다. 이것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결로 하면 민주당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이에요.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도 깊게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고 조금만 하다가 다수결로 한다?

지금 우리 국토법안소위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국토법안소위에는 저희 야당보다 여당 위원님들 중에 지자체단체장 출신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다 침묵하고 계세요. 법안 논의를 하는데 거의 하시지 않는다고요. 물론 미리 다 봐 오셨겠지요.

저는 바라건대 법안을 통과시킬 거면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고정되어 있고 후대 미래에게, 미래세대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표결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할 필요없습니다. 하나 마나 한 게임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른 백 명하고 아이들 세 명하고 줄다리기하면 하나 마나 한 게임이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정재 위원** 그래서 오늘 이 비민주적 절차는 그야말로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위원들이 꿈쩍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비민주적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문진석 위원** 전체회의 열어서 의결하는 게 왜 비민주예요? 이것도 하나의 절차예요.

이것도 법에 있는 절차라고.

○김정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측……

그리고 이 국토위가 5월 30일 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진석 위원 관행에 안 맞지만……

○김정재 위원 계속 지속이 됩니다. 6월 달에도 이 법안 심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아보시고요.

○김정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철회되고 정상적인 우리 상임위가 가동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지요.

○김정재 위원 어떤 답이요?

○김은혜 위원 어떤 답이지요?

○위원장 맹성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점이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들이 타협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계속 유보시켜야 되는 겁니까? 여쭙 볼게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유보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정재 위원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한 번 만에 다 통과돼야 됩니까, 그러면?

○김종양 위원 시간을 가지고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도읍 위원 주택공급을 위한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윤종군 위원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상반기 국회가 끝났습니다. 언제 처리한다고 또 시간을 미뤄요?

○김희정 위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윤종군 위원 좀 적당히 하세요.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답할 수 있도록 30초만 주세요.

○김종양 위원 상반기 끝나면 세상이 끝이 나요?

○윤종군 위원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또 누가 어떻게 압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정재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 전에 미리 해야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주택공급을 위한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념에 간혀 가지고.

○윤종군 위원 지금까지 국회가 그렇게 했어요?

○김종양 위원 지금까지 국회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다수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폭압적인 그런 정치를 했어요?

○윤종군 위원 국민의힘보다 훨씬 민주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정재 위원 무슨 민주적이에요?

○윤종군 위원 상반기가 끝나 가면 국민들한테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질질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치쇼예요?

○북기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들 한 번씩 하는 걸로 마무리하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국민에 대한 도리는 소수의 입장도 존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가지고 합의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윤종군 위원 지금까지 존중해 왔잖아요.

○이연희 위원 전년부터 논의를 했어요.

○김종양 위원 저기 문진석 위원도 관행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처리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진석 위원 아니, 국회가 언제까지 관행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고요.

○김종양 위원 관행을 좀 존중하세요.

○윤종군 위원 이만큼 존중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일 때?

○문진석 위원 아니, 합의를 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언제까지 국회가 관행대로 해야 됩니까?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이연희 위원 작년부터 논의했잖아요.

○김종양 위원 말이 표결이지 다수의 힘을 빌려 가지고 다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윤종군 위원 국민의힘이 다수당 때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김정재 위원 다수당 된 적 없어요.

○윤종군 위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김정재 위원 지난 10년 동안 다수당 된 적 없어요.

○윤종군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상반기 국회 다 끝나 갑니다.

○김정재 위원 소수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사람들 순서대로 주세요.

○김정재 위원 순서대로 다 합시다. 그게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역지를 부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기왕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들었고요.

○김정재 위원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김희정 위원 아니요, 저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북기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모두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안타깝고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래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쇼다라는 주장도 있으신데요, 생각해 봅시다. 정부에서 9·7 대책을 발표한 지가 벌써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김정재 위원 그런데 왜……

- 복기왕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 김정재 위원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나?
- 복기왕 위원 자기들이 아니고요.
- 김정재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희 발언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 복기왕 위원 만 8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정재 위원 뭐가 안 됐습니까, 계속 논의했지요.
- 복기왕 위원 아이참, 김정재 위원님.
- 김정재 위원 예, 예, 예, 복기왕 감사님.
- 복기왕 위원 좀 예의를 지키세요.
- 김정재 위원 예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 윤종군 위원 발언 시간 좀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까 말할 때 저희가 다 들었잖아요.
- 복기왕 위원 마지막에 이종욱 감사님께서 소위원회 법안 처리를 위해서……
- 김정재 위원 한번 당해 보세요.
- 문진석 위원 뭘 당합니까?
- 복기왕 위원 김정재 위원님 마이크 켜고 얘기했을 때는 한두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 김정재 위원 한번 당해 보십시오.
- 윤종군 위원 우리가 무슨 말을 잘랐어요?
- 복기왕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목을 잡고……
- 김정재 위원 언제 발목을 잡았습니까?
- 복기왕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재 위원 회의 기록 보십시오. 발목 잡은 적 없어요, 발목 잡은 적 없습니다.
- 복기왕 위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9·7 후속 대책 이후에 만 8개월 지나는 동안 작은 차이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을 안 시키고 회의가 안 열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줬어요.
- 이재명 정부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공급도 확대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국토상임위의 몫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현재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숙제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우리 임기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더 이상 우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상반기 국토상임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더 이상…… 우리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이런 노력들, 하지만 그 노력보다 공급 대책과 또 부동산 안정을 바라고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하고 하지만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가치로 국정을 운영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매우 크게 이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의 국토교통위원회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저는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야 간에 첨예하게 쟁점이 되었던 전세사기피해를 위한 특별법도 저희 다 합의 처리를 하고, 두 번이나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여야 간에 당론으로 반대가 있는 게, 갈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중에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합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앞에서 혹은 뒤에서 서로 설득을 해 가면서 오늘 합의돼서,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도 14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되어서 이 법을 기다리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북기왕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몇 차례 주택 정책과 관련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관련된 법들이 조금씩 기다리는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때 8·8 대책과 관련된 법률을 민주당에서 한 건이라도 통과시켜 준 게 있습니까? 상정도 못 시켜 준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건대 지난번에 토허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광역시 내에서도 권한을 갖는 거는 우리가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했지만 이걸을 좁히지 못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로 갖고 가는 것, 저 이해합니다. 그게 끝까지 합의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그런 법안들이 아니에요. 당론으로 서로 반대가 있거나 한 법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법기관인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소신과 그것 때문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이견들을 좁히고 좁히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 국토법안소위 하면서 한 분 위원님만 반대하더라도 그날,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할 때도 통과 안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위원님을 양당 간사가 같이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의 처리된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여기 있는 법, 오늘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안들 중에는 소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세 건이나 있어요. 나머지 법안들 중에서, 이 법안들을 한 번 논의했을 뿐입니다. 쟁점이 한 번 가려졌을 뿐이에요. 이 법안들도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로 넘어가면 합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더기로 합니까? 그나마 우리 국토법안소위가 모범적이었는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최악의 법안소위로 이렇게 만들고 끝내실 작정입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여야 간사 간에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도시재정비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당의 요구를 받아 주면 좋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민간 부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주택시장에 역작용이 있을까 봐 한사코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공급 정책이 제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토위에서 자, 여당의 사정이 있으니 이번에는 공공 분야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되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당의 요구도 들어 줄 그런 여지를 만들고 이 법안은 처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법안들은 국토법안소위에 맡겨 주면 다음번 소위에서 다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법이에요. 왜 이걸 마지막 국토위를 끝내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동안 2년 동안 해 왔던 건 뭘니까?

위원장님, 제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해서 여야 간사 간에, 정말 여당 입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 야당에 협조를 요구해서 합의 처리할 부분들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위로 다시 넘깁시다. 이렇게 끝내지 말자고요.

○위원장 맹성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도읍 위원 5월 7일 본회의 전에 국토 전체회의 한 번 더 합시다, 소위 열고.

○김희정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맹성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건지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은혜 위원 도시재정비법은 다음에 합의하기로 하고 저희가 다 절차로 의견 접근을 했어요.

○김희정 위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단정을 합니까? 왜 그렇게 단정을 해요?

○김정재 위원 건설산업법도 하나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것 다음에 준비해서 하자 그랬고 나머지도 한두 개씩 있어서, 이걸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이것 준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번에 열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올라오니 거의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김정재 위원 그리고 권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리고 도시재정비법은 130%도 인정해 줬고 다 오케이했습니다. 다만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은 녹지를 너무 완화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만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도 전자대금하고 전자카드 다 동의했습니다, 모두. 그런데 전자카드 연결하는 것만 그것만 문제가 됐어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정재 위원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 김정재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하나만요. 제가 우리 위원회를……
-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법안을 올려 가지고 쟁점이 뭔지를 해서……
- 김정재 위원 보십시오. 아니, 지금 만약에 전체회의에서 하면 하나 마나지요.
-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왜 전체회의에서 하나 마나입니까?
- 김정재 위원 무조건 다수결로 할 거라……
- 위원장 맹성규 아니, 다수결이 아니라……
- 김정재 위원 다수결로 할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맹성규 도시재정비법도……
- 김정재 위원 법안소위로 넘겨 주세요.
- 위원장 맹성규 건설산업기본법도 김정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빼고는 다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은혜 위원 아닙니다. 용산공원법 같은 경우에도……
- 전용기 위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 김은혜 위원 토양 오염됐다고 하시는데 전체 부지에 대해서 토양 오염 정화를 먼저 해야지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오염된 땅 위에서 주민들이 살라는 겁니까?
- 복기왕 위원 그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게 뭐니까?
- 김은혜 위원 용산공원에 대해서 소위에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 복기왕 위원 차라리 하지 말자고 그러세요.
- 김은혜 위원 주민들의 건강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다 무시하고 일부만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지하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세요? 그 흐름에 따라서 재오염될 수 있는 거를 먼저 주택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같은 것은 다 묵살하는 겁니다.
-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 문진석 위원 정화를 안 하고 어떻게 주택을 지어요?
- 김은혜 위원 녹지 줄이고, 그렇게 초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녹지 줄이면서 아파트 먼저 짓겠다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의 철학이에요?
- 이연희 위원 그러면 용산공원 개발할 때 똑같이 시작하셨어야지요.
- 김은혜 위원 그게 이재명 정권의 철학입니까?
-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 김은혜 위원 왜 소위에서 단 한마디 못 하시고 여기 전체회의에서 손 하나 들어서 거수 표결하자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은 법안이 올라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 김은혜 위원 법안이 올라와서 얘기했지요. 그렇게 법안이 와서 논의하는데 오늘 소위도 안 하고 이렇게 전체회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맹성규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올려 가지고……
- 복기왕 위원 소위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전체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 김도읍 위원 그게 무슨 절차예요?

○복기왕 위원 절차예요.

○김은혜 위원 다음 회의 때 저희가 합의하기로 하고 논의안이 왔고, 절차까지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지 않았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문진석 간사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논의 안 했습니까, 이것을?

○문진석 위원 뭘 동의합니까?

○김정재 위원 논의 안 했냐고요.

○김은혜 위원 봐 봐요, 도시재정비법도 두 가지로 압축을 했고 용산공원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을 상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진석 위원 논의했는데 결국 녹지를 가지고 쟁점이 돼 가지고 안 된 것 아니에요?

○김은혜 위원 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문진석 위원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가 폭력이고 무력이에요?

○김정재 위원 이게 폭력이지 뭐니까?

○문진석 위원 이게 국회 절차에 없는 법이에요? 법에 없는 절차예요?

○김정재 위원 국회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관례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지요.

○복기왕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 꺼 놓고 싸우지 말고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정재 위원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문진석 위원 관례를 빙자해서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재 위원 문진석 간사, 계속해서 사람 얘기하는데 말도 못 하게 하고……

○문진석 위원 법안소위 할 때 얼마나 발목 잡아요? 되지도 않는 논리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김정재 위원 무슨 발목이에요? 잡고 싶은 발목도 없어요. 뭘 잡아요, 잡기는? 잡고 싶지 않아요. 뭘 잡아요?

○문진석 위원 발목 잡고 있잖아요, 계속.

○김정재 위원 위원들 말도 못 하게 하고 무조건 논의 없이 통과시키자 그러고……

○문진석 위원 부동산 정책만 계속 발목 잡고 있잖아요.

○김종양 위원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문진석 위원 뭘 양보합니까?

○김종양 위원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라 그런 것 아니에요?

○문진석 위원 뭘 양보해요? 빨리 진행하세요.

○김종양 위원 안 하면 다수결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위원장 맹성규 김 위원님, 이것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안 하면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뭐가 쟁점이 되는지 올려 놓고, 어차피 소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는 게 민주주의예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김은혜 위원이나 김정재 위원이 국토소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합의가…… 김도읍 위원님, 이것 합의되겠어요?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김종양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당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진석 위원 건설기본법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합의가 됩니까?

○위원장 맹성규 어차피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하게 되면 다시 이런 모습으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만 말씀하세요.

김희정 위원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희정 위원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솔직히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습시다만 그래도 맹성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야 합의의 모범을 보이는 위원회가 되려고 애쓰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다선 위원님이나 이런 당직을 맡으신 위원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거나 이런 것 없이 모두가 모범을 보이면서 정말 정책으로 협조하려고 다선 위원님들부터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 왔습시다. 그리고 전임 간사 맡으셨던 권영진 간사님이나 문진석 간사님 그리고 현재 간사인 이종욱 간사님과 복기왕 간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려는 모습 잘 봐 왔습시다.

심지어는 한 석밖에 없는 당에서 오신 위원님들 의견도 절대로 한 번 만에 무시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이쪽 야당에는 지금 한 분씩밖에 안 들어와 있는 위원님 계시는데도 그분들 의견 일일이, 그러니까 말 안 들어 봐도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는 정책을 가진 당 위원님들 의견조차도 저희는 들어 왔습시다.

심지어 제가 어제 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지하화 관련 된 법안 여당 의원님도 내셨고 야당 의원님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타깝게도 교통소위에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착석해 있었고 위원장님 계시고 손명수 위원님 한 분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가장 양꼬가 되는 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부분이어서 만약에 정말 저희가 표결로 무리하게 하려고 했으면 어제 기습적으로 충분히 소위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물론 상임위나 법사위 가서 안 될지 모르지만 소위에서 통과됐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왜 소위에서 통과 안 된 것 당신들이 어기냐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시다. 하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다 앉아 있고 민주당 위원들 한 명도 없는 순간에도 그런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시다.

위원장님, 5월에 선거 있고 바쁜 건 압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이고 그때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이 모습은 그때 가서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이나 빈 건축물 정비법이나 건축물관리법은 아예 소위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정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쪽이 저희지 않습니까? 감히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모범적인 위원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배 위원님.

○배준영 위원 저는 맹성규 위원장님께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토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절차에 맞게 민주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이지 이런 위원회가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오늘이 위원님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위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제대로 다뤄 보자라고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입법 기억나시지요? 전월세에 대해서 캡을 씌우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자, 세입자를 보호하자. 이것 얼마나 아름다운 명분입니까? 참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가 폭등하고 전세 품귀하고 그리고 가격 이중제가 생기고 매물 잠금 현상이 생기고 더군다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깡통전세가 생겼습니다. 전세사기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게 임대차 입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명분을 갖고 생긴 법을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소위에서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48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그것에 만족하신다 그러면 오늘 일사천리로 다 한번 끝내 보시지요.

결과가 마음대로 도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위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 임무인데 마지막 날이라고 손 탁탁 털고 그리고 던져 버리고 우리 임무 다했다고 끝내 버릴까요? 여태까지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충실한 입법행위에 너무나 반대되는 행위가 마지막 날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딱 끝낸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제로 하게 되면 이 법은 임대차 입법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소위가 왜 있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우리가 소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위로 다시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위원장 맹성규 또 하시게요?

○이종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세요.

○이종욱 위원 내용적으로는 많이 들으셨지만,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으로 굉장히

장히 심각하다. 저 공무원 생활 때도 국회 운영하는 것도 봤고 국회의원으로 2년 됐습니
다만 이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이런 것 안 할 것 같은데요. 상상도 못 했
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우리 소위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한 달 동안 계속 강행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번 했는데요. 그렇게 한 상임위 있습니까? 나름 열심히 했고 그래
서 여야 협조로 협의해서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당은 부족하다 그러지만 부동산거
래신고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특정건축물 정리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것 다
소위에서 합의해서 의결해서 오늘 의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
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안이 많이 밀렸지요.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법안 처
리 안 된 게 야당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안 되고 있을 때 위원
장님 뭐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뭐 하셨어요? 필리버스터하고 그런 정치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또 그 여유를 즐긴 측면도 있다. 해외 출장들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것도 자
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위원장님 말씀에 법안소위 논의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거냐? 아니, 소위 한 번 열어 가지고 통과 안 되면 바로 일방
강행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올린 안건이 그렇게 쟁점이 아닙니다. 소위 의결을
한 것도 보완해서 의결하고 계류 중인 것도 가져와서 대안, 수정안 의결하고 논의 한 번
도 안 한 것도 원안 의결하겠다는 것은……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임기 한 달 남아서 5월 한 번밖에 없다, 시급히 끝내야 된다. 그
런데 오늘 가져오신 법안을 한번 보세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4
월, 5월까지 해야 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공공청사 복합개발 이것도 단
순히 근거 만드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법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상임위 운영, 절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
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건 한마디로 입법부 권위의 문제다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기본적
인 문제입니다.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하명받아서 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나름 작동을 해야지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하실 때 행정부를 어떻게 옥죄는지
다 보여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
스로 실추시키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대안
도 냈잖아요. 필요하면 소위를 한두 번 더 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딱 30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엄 위원님 하시지요.

○**염태영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은 한마디씩 거의 다 하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위원님들 상식과 양심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인데 오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속은 끓어도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선거 정국에 들어가니까 바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충북도당위원장이라서 일정이 내일부터 쏙 짜여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렇게 호소하고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5월 4일이든 6일이든 한 번쯤 더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숙성시켜 주시면 그나마 우리 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자괴감이 줄어들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 저도 30초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은혜 위원** 도시재정비법, 용산공원법 다 녹지의 급격한 축소 때문에 지자체 그리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부산의 하정우 후보 주민 손잡다가 손 탁탁 털던데 이것 법안도 탁탁 터시기입니까?

녹지 털기, 야당 털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염을 없애서 하지 마시고 소위를 오후라도 열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 절차 호소입니다.

○**복기왕 위원** 30초 지났어요.

○**김은혜 위원** 할 말도 없어요, 이제.

○**위원장 맹성규** 염 위원님 하시겠어요?

○**염태영 위원**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님이 한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염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심에 찢려 가지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쟁의 요소만 계속 다시 반복하는 일에 저희가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발언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들어서 이종욱 위원장님께서 국토법안소위를 자주 열어서 몇 가지 논의를 계속해 온 것을 참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할 때도 왜 우리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않느냐고 피 토하듯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세 번 이렇게 최근에 열리고 또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가 성과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은 기간과, 우리가 전반기 국토위를 정리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어디서 정무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대행하거나 저는 그렇게 한 부분이 하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용산, 저는 환경 쪽을 주로 해서 잘 알지만 그런 우려가 있으면, 이전 정부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어린이공원 어린이날 대회까지 합니까? 그런 것은 어차피 다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전반기 마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자가 있으면 법안심사소위도 더 하고 국

토위도 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논의했던 사람만이라도 매듭을 짓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지금 맹성규 위원장님의 이런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맹성규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이렇게 참고 참나 했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는 정리를 해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그 정리를 해야 될 순간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구성돼서 또 논의를 해서 언제 갈지 전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이 정도에서는 좀 끊고 매듭을 짓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빠르게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에 상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정이 됐으면 충분히 논의됐을 것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로 치고 받고라도 해서 많은 토론이 되었을 텐데 상정조차 안 돼서 대화조차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국토소위, 교통소위 둘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소위 맡아서 예산 관련된 내용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위원들은 그러면 법안 어디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상정도 안 해 주시고 계신 부분들 때문에……

○김은혜 위원 아니, 15번까지 상정 안 된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답하세요.

○전용기 위원 상정도 안 해 주셔서……

○김은혜 위원 15번까지 소위에 상정 안 된 법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정 이미 다 해서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입니다.

○전용기 위원 상정을 안 시켜 주잖아요. 상정 똑바로 시켜 줬으면 논의했겠지요. 논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김은혜 위원 결론이 안 났는데 상정도 안 됐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용기 위원!

○전용기 위원 우리 국토소위, 교통소위 얼마나 열렸는지 한번 보세요. 소위가 안 열리잖아요. 뭘 열어 줘야 우리가 회의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김은혜 위원 아무리 마이크에 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토소위에서 이것 본 적 없잖아요.

○전용기 위원 그걸 안 열어 주니까 우리가 전체회의에 넣자고 하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소위 위원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 위원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왜 있는 겁니까?

○김은혜 위원 국토소위에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소위에서 논의된 거예요.

○이종욱 위원 하고 있잖아요!

○김은혜 위원 소위에 상정이 안 됐다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전용기 위원 소위에서 상정을 안 시켜 주니까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용산공원에 굉장히 오염된 토지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냐 말씀 주시는데 그 오염된 토지에 애들 뛰어놀라고 공원 만들어 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 뒤집어엎고 나서 제대로 개발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김은혜 위원 기본계획 전체는, 모든 기본계획 안에서 한국군 미군 다 철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오염된 땅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환경단체, 과거의 민주당이 토양 오염됐다는데 어린이공원 안 된다고 했지요?

○전용기 위원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공원 만들어 주는 게 더 비상식적이라는 거지요. 개발하면서 그 토양 제대로 환경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은혜 위원 오염 안 됐다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본계획 지키지도 않고 토양 오염 확인도 안 하고 아파트 짓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마세요.

○전용기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정 안 되고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사변경동의서 저희가 낸 것에 동의해 주시고 빠르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용산공원.

○김정재 위원 아니, 한 번 논의하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논의도 안 하고 전체회의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폭력이지 뭐니까, 이게? 안 돼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위원님.

○김정재 위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김정재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위원장 맹성규 얘기할 동안 조금만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각자의 입장 그리고 각 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왜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면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른 분 위원님 계시지만 원 구성이 되면 여기 몇 분이나 같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5분의 1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김희정 위원 우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은혜 위원 5월 7일까지 8일이나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할 동안 좀 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법안이 우리가 진짜로 막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 700개 올라온 것 그냥 다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계속해 계시면 저는 우리가 이제 소위에서 좀 부족하게 논의됐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올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다수결이라고 하시면, 다수결의 폭거라고 하시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소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통과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소수파의 폭거 아닙니까?

○김정재 위원 소수파의 의견 제시입니다.

○이종욱 위원 무슨 폭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다수파의 의견 개진……

○김정재 위원 토론이에요, 토론. 여태까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국회의원 했지만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왜 지금 합니까, 이렇게? 심지어는 화물자동차법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연희 위원 전체 상임위 중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요!

○김정재 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위원님 주장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김정재 위원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국토위에서, 운영위도 아니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북기왕 위원 위원장님, 일 대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민주당도, 저희도 저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정말 민주당의 ‘민주’ 빼야 돼, ‘민주’ 빼야 돼.

○위원장 맹성규 빼세요, 그러면.

○김정재 위원 폭력당이야, 폭력당.

○위원장 맹성규 소위 심사……

○문진석 위원 뭘 폭력당이야!

○김정재 위원 폭력당이지요. 이게 폭력당이지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진석 위원 이게 폭력이야?

○김정재 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진석 위원 반민주도 아니고 비민주도 아니고 국회법에……

○이종욱 위원 폭력이지요, 폭력!

○김정재 위원 반민주, 비민주! 반민주당, ‘반민주’로 바뀌야 돼요.

○이연희 위원 잘 토론하고 계시잖아요.

○김정재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문진석 위원 국회법에 따라서 전체에서 표결하게 돼 있어요.

○김정재 위원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문진석 위원 소위 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이 맡아서 표결 처리해야 될 것도 표결 처리 안 해요.

○김정재 위원 표결 처리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전체회의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민주당이 소위 위원장 할 때도 표결 처리한 적이 없어요, 소위에서.

○문진석 위원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이종욱 위원 했어요?

○김정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 소위 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청원과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사전청약사업 취소에 따른 당첨자 지위 승계 및 유지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46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그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욱 위원 이의가 있다는데 왜 가결해요?

○위원장 맹성규 청원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종욱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요.

○위원장 맹성규 드린다니까. 회의 진행 좀 하고 나서 드리겠다고요.

○이종욱 위원 바로 주세요, 그것 하고.

○위원장 맹성규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역시 심사보고한 대로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간곡하게 부탁도 했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강행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확고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의사일정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동의해 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오늘 전체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따른 모든 책임이나 향후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여당 위원님들이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시다.

잘하세요. 앞으로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김희정 위원** 회의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해 주시고.

○**김정재 위원** 이렇게 일방 처리하고 절차를 어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논의를 안 하시잖아요, 추가로.

○**이종욱 위원** 복기왕 간사님 실망입니다. 10분 전에 알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어제는 알려 줬어야지. 안 그러습니까?

○**김정재 위원** 아니, 법안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일방 처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다수당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종욱 위원** 갑시다. 나가요, 다.

○**김정재 위원** 문진석 위원님이 저희 소위 때 뭐라 그러셨는지 얘기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충분히 얘기하셨잖아.

○**김정재 위원**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문진석 위원님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 와서 자기 뜻하고 다르면 위원들 무시하고……

○**문진석 위원** 무슨 토론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법안 심사하기 전에는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김정재 위원** 공부했지요. 나만큼 공부한 사람 있어요?

○**문진석 위원**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지역구 얘기하면 그게 법안 심사입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김정재 위원** 그게 지역구 얘기입니까? 지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진석 위원**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이종욱 위원** 갑시다.

○**김정재 위원** 아니, 대장동 절의했다고 이재명 심기 건드렸다고 윤리위 제소한다 그러고. 그게 의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문진석 위원** 당연하지요. 허위사실 얘기하니까.

○**김정재 위원** 무슨 허위사실이야!

○**문진석 위원** 허위사실이지.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조금 이따 법안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텐데요. 짚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과 제5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과 제5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4항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유희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안 유인물 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과 제5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9항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과 제6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2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과 제6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과 제6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6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3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8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복기왕 위원 외 12인 서면동의)

(12시18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위원께서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58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동의자 외의 찬성자가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경동의서를 제출하신 복기왕 위원님께서 동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복기왕입니다.

국회 전반기가 끝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금까지 많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법안들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국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열지 않았습다. 그사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 커졌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과 위험이 계속해서 누적돼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9·7 후속대책 관련된 법안들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민생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민생의 부름을 우리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야 겨우 소위가 열렸습니다만 여전히 핵심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1조 및 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공동주택과 공장·창고 화재안전, 도심주택 공급과 노후 건축물 정비, 도시재정비 등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민생과 떨어져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우려와 지적도 우리 수정안과 대안에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반기 임기 동

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토교통위에 부여된 사명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논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야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당연히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준비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 차원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을 국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 제도를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이 민생법안 지연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총 12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서면으로 제출한 해당 법률안들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복기왕 위원의 동의대로 58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9항부터 156항까지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안건 추가 동의를 경우 동의에 대해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10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6)

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4)

1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9)

1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2)

1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7)

1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3)

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9)

1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1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4)

1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1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1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1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1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2)
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9)
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0)
1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3)
1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1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1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1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77)
1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1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1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
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
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1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6)
1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1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
1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1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
13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1)
13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58)
1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14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14)

143.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
14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14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146.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1)
1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5)
14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1)
1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3)
1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3)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98)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15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15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5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3)

(12시22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99항부터 15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부터 87항까지와 제9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8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기 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어요. 복기왕 위원님,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됐지요? 수

석, 어떤 내용이 추가됐습니까, 명확하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건축법 관련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내화구조 의무화하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1건 추가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소위에서 의결하신 대로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는, 공장 및 창고 지붕 등 내화구조 의무화 내용을 소위 의견에 더해서 지금 복기왕 위원이 추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의견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 위원님.

○염태영 위원 어제 법안심사소위 때 이 문제가 논의됐고요. 이견이 없었고요. 그중에 유예기간을 얼마까지 두느냐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우리 국토위 전체에서는 다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염태영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과 제90항 그리고 제100항부터 112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주택 진입 기준 강화,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이 보완 수정의견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의견인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기존 2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13건 추가가 되었는데 건수는 많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진입 기준을 강화하고 또 주택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차관님, 어떤 식으로 내용을 강화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지주택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진입 관리를 통해 부실 조합 발생을 조속히 차단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해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소위에서 논의된 것 외에 지금 지주택 진입 기준 강화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을 보완한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부터 제97항까지와 제113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차관님, 어떤 내용이 더 추가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비주택용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거기에 대해서 수석, 특별한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특별법은 대부분의 사항들이 소위에서 합의가 되었고요. 방금 차관 설명한 것처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장기 미사용 토지용도 재조정에 대해서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준호 위원 정부 측 동의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아니지요. 수정안 동의 아까 해 준 거니까요.

위원님, 특별한 의견 있으세요?

○한준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복기왕 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119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0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하기 전에 수석,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소위에 안전으로 정한 적은 있지만 소위에서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불법적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부터 12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

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석,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아까 위원님들 토론 관계에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도시재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소위에서도 일정 부분 합의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녹지 부분에 대한 합의에 못 미쳐서 오늘 추가로 의사일정에 올라가게 된 법안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녹지에 합의가 안 됐다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니까 녹지 비율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합의로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했는데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 녹지 비율하고 민간 참여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는 일단 논의된 건 다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공공 부분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일단 통과시키고요. 민간에서의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까 야당에서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간 부분을 이번에 동시에 통과시키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차관, 알면 답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부동산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일단 녹지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녹지 문제는 지금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서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하고 공원·녹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할 얘기 있어요, 법안에 대해서?

○복기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민간에 대한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제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토위 내에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혹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당장 급한 것은 공공 분야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우리 상임위 내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위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라는 그런 논의 과정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늘 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공공 부분에 대한 정비를 축진을 하고 추후에 아까 복기왕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원이, 국토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문제도 좀 속도감 있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남아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 축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부터 13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34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수석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건설공사에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금채불 방지 취지에는 소위에서 모두 협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민간에 의무화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라온 수정 대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쪽으로 수정하여 대안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차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5항과 제1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37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석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용산공원 조성 계획 추진이 부진한 데 대해서 캠프킴 등 복합시설지구 조성 시 녹지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의 부분적 조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아까 야당에서 걱정한 대로 녹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 상황?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녹지 비율은 기존의 도시개발법에 있는 녹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현행 주택법에 있는 녹지 비율로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녹지가 줄어든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오늘 용산공원의 녹지 비율과 또 토질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우려는 일정 부분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녹사평과 그 주변 지역에 유류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계속 지적되고 또 토양 오염 개선 계획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오늘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용산어린이공원 그리고 또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들에 무수히 많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뭉개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는 것을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꼭 유념하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다시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비율은 캠프킴을 개발하는 겁니다.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고 지금 용산공원 옆에 있는 캠프킴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적용되는 것이 도시개발법 녹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거기를 주택법 기준으로 녹지 기준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오염 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실행 과정에서 세심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8항부터 제14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41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석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공공 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게 왜 계류가 됐어요, 소위에서?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소위에서도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약간 위원님들 간 논의가 예산 지원 부분에서 합의에 못 이르렀는데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고, 예산 지원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지금 법에서는 저희 소위에서 다뤘던 내용에 추가된 내용은 없는데요. 지금 이 법 자체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늘리는 법안은 아닙니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위에서 이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이견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맞도록 의사결정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견이 없는데 이견 한 게 돼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 아는 사람 대답을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세출예산 계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그린리모델링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그린리모델링에 예산 계상을 노력하도록 새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기존 법에도 세출 예산 계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쭉 정리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린리모델링까지 하나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 분야 이거 문제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맹성규** 지금 논쟁이 됐던 예산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특별한 쟁점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점 점차적으로 이에 관련되는 예산이 더 추가 확보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유인물 6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조부터 제19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복기왕 위원이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 뭐에서 합의가 안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이 법은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활용한 공공복합개발 사업을 통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내용인데요. 소위 당시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교육청 소유 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협의 문제에서 합의에 못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문진석 **위원** 그것 협의해야지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논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지자체하고 교육청……

○문진석 **위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 밀어붙이기 사업 아니냐 이런 논리였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 내용을 좀 보강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합의에 못 이른 부분은 협의 가지고는 부족하다, 충분하다에 대해서 이걸 때문에 합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는 야당이 주장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추진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시에 지방정부 위원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각 계획 수립·승인 전에 지방정부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게 이제 법률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 보완하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련 타 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기왕 위원이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유인물 2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복기왕 위원이 제출한 의견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저기가 됐어요, 합의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미사용 학교용지 이용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장기간 미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보신 노후 공공청사법과 비슷하게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여기에 추가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거기에 대한 정부 복안은, 대책은 뭘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도 제시가 되었듯이 주민 의견수렴 강화 의견을 수용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나중에 학교용지가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학교용지……

○위원장 **맹성규** 예?

자, 그래서 학교용지를 복합개발 활용을 할 때에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학교용지가 필요한지…… 이런 거예요. 학교용지를 추가 개발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든지 오피스텔을 짓든지 지으면 인구가 모이고 당연히 오히려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입안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구가 유입됐을 시까지를 감안한 계획을 세운다면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은 미리미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지역 학생 수 추이, 지역 재개발 등에 따른 학교 수요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추진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하면 지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유인물 7쪽부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44항부터 154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5항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석, 의견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빈집 관련 특별법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중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행 빈집법 등의 내용에 규정된 사항이면서 규율 범위를 빈집에서 빈 건축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소위의 안건으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심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예상되는 쟁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관, 쟁점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상 쟁점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해 주신 법안이고 정부 입장에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관련되는 기관이나 지자체나 타 기관 등과도 업무가 상충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이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 빈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복기왕 **위원** 이 문제는 이미 농어촌 3법이라고 그래서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이 농해수위도 통과를 했고 우리 국토위에서도 한 가지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 법안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심사가 안 됐던 겁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의 간사였던 권영진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를 할 정도로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까지 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간단한 내용입니다.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소위의 안건으로는 잡혔

었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25년 7월 광명 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내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 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좀……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하나만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 연번 141번 대안으로 올라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아까 장관님께서 그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공공부문까지 확대를 해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일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 맹성규** 바로잡아……

○**한준호 위원** 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차관님이든 장관님이든 답을 조금 명 확히 해 주시지요. 그냥 탁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이게 기록이 남는 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제가요?

○**한준호 위원** 예산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에요. 예산을 오히려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 는 거고요.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문제로 소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질의 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이 조금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공공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해야 되겠고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2차 지원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민간 단위의 그린리모델링 예산도 2차 지원,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려서, 생각보다 많이는 못 했지만……

○**한준호 위원**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도 어쨌든 재정 당국과 서로 협의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한준호 위원** 그 대답이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됐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석이 정확하게 바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지원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률안 문구에 대해서 세출예산 계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지만이 법 규정 자체로 예산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준호 위원** 예, 그 차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10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산회 전에 황운하 위원님, 아까……

○**황운하 위원** 산회 전이긴 한데 짧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월 7일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22일 날 소위 때 위원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좀 모호하거나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관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 답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인

데요. 2004년에 아시다시피 현재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현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입법부가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과거에 위헌 판단을 받은 법안의 재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 현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을 명시한 의료법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했는데 국회는 똑같은 취지의 법을 재발의했고 이후 현재는 입장을 변경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법 발의에 어떠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히려 국민적인 요구와 입법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헌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입법 자체를 주저한다면 이거야말로 입법부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위헌 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한 지난 2004년 현재 결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현재의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은 국민의 인식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사회적 환경,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헌법이 법조문의 경직된 해석에 얽매어서는 안 되고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살아 있는 법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이 47.9%였고 반대하는 답 39.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더 높다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수명을 다하였다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확인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 문제와 같이 관습헌법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입법적 결단을 통해 재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회의 마땅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과 국민 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가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따라 선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수도 완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맹성규 예, 더 드리세요.

○황운하 위원 국토부는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했는데 이에 관련된 국민의 인식 제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정책 설득 작업 등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2일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차관은 특별법이 헌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느 부분에 헌법적 논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법률 검토의견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이 참여정부 이후 20년 과제인데 국토부가, 정부가 지난 20년간 헌법적 논란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또 법률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5월 6일

까지, 공청회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을 의결하는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체회의인데 애써 오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지방선거 이후나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시작될 22대 후반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관련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민생입법 과제를 선별해서 오늘 처리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우려와 지적은 충분히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전체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못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법 설계대로, 법 입법대로 법안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아마 전체회의를 못 하더라도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활동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이팅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 7일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는…… 공청회지요?

○복기왕 위원 예, 공청회.

○위원장 맹성규 세종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제가 과감하게 간사님한테 마지막에 사회 볼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못 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엄태영 윤재옥 윤종균 이견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2인)

윤종오 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도로국장 김효정

철도국장 김태병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항공정책관 이상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욱

새만금개발청

청장직무대리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현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안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정왕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3)

4월 16일 회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8)

4월 17일 회부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6)

4월 20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9)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2)

이상 8건 4월 22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8)

4월 23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3.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66)

4월 24일 회부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7.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29)

4월 28일 회부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6)

4월 29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8)

4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2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2)

4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51)

4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